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47
----------	-------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현정 · 손명수 · 문금주
박홍배 · 안도걸 · 이훈기
양부남 · 복기왕 · 이강일
강준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42조의6제2항에 따르면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 1천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음.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은 회사의 경영에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임.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시가총액이 큰 상장회사일수록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주식의 취득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여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상장회사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 요건을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을 보다 두

텃 게 보장하고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2조의6제2항).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2조의6제2항 중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를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주제안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생략)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현행과 같음)
②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u>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u>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3조의2(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 ----- ----- <u>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 이상에</u> ----- ----- ----- ----- ----- ----- -----.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